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 목차

- I. 노인돌봄, 사회적 책임의 시대
- II. 노인학대 개념 이해
- III.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 IV. 노인학대 신고 및 행정처분
- V.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 노인돌봄, 사회적 책임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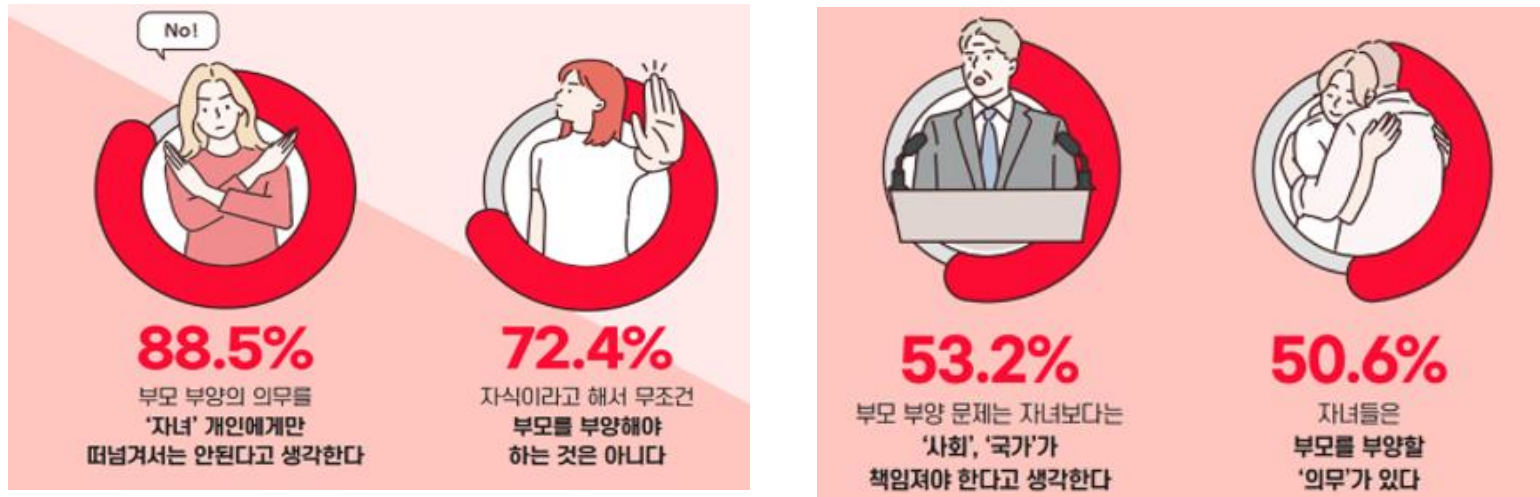
1. 변화하는 노인돌봄의 추세

# 변화하는 노인돌봄의 추세

노후에 나를 부양해야 하는 주체, 국가와 가족 49%, 나 자신 47%

응답자 만 45~64세, 1,000명 (2022.)

## ‘부모 부양’ 책임 소재 관련 인식



출처 : EMBRAIN, 부모부양 및 '영 케어러(young carer)' 관련 인식 조사 보고서, 조사기간(22.11.02~11.07)



## 노인학대 개념 이해

1. 정의 및 용어
2. 노인복지법제39조의9(금지행위)
3. 노인학대 발생 원인

# 사회복지 사업법

---

## 제1조 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 제1조 2(기본이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 제1조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노인학대 개념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 노인학대 관련용어

- **보호자**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의제2호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노인학대관련 범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보호자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해당되는 죄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 ”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원인

	비율(%)
노인의 개인적 기질 및 행동(치매행동, 비협조적 자세 등)	23.1
직원의 성격이나 기질	23.8
직원의 스트레스	8.4
직원의 교육, 지식, 케이기술 부족	13.5
인력 부족과 인원배치 어려움	14.2
시설의 케어(서비스 제공) 가치관과 이념 결여	7.8
시설장이나 직원 간 갈등	0.4
사건, 사고를 묵인 또는 승인하는 조직문화	5.7
낮은 보험수가와 임금	3.1

출처: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활동

	비율(%)
케어 기술, 치매 관련 충분한 교육과 훈련	23.1
직원 스트레스와 심리상담 강화	23.8
시설 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8.4
인력확충	13.5
직원 인적성 검사 강화	14.2
가해자 처벌 강화	7.8
보호자, 자원봉사자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0.4
신고의무제 강화	5.7
시설장 및 관리자 대상 케어(서비스제공) 가치관에 관한 충분한 교육	3.1

출처: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1. 신체
2. 정서
3. 성
4. 경제
5. 방임, 자기방임
6. 유기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주요 행위

-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한다.

##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헌법 제37조 2항”



#### 정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필요한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  
제한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피해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보다 너무 커서는 안됨**

# 국가인권위원회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17.2.23)

## 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신체적 제약 원칙

1. 노인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것
2. 업무 편의를 위한것이서는 안 된다.
3.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신체적 제약의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주요 행위

- 존대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
-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
-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다.  
(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피한다. 눈을 맞추지 않는다.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시설 내 정서학대 인식 (계 : 1,432명)

	전혀 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 아님	다소 학대인 것 같음	명확히 학대임
이용자를 모욕하거나 욕설을 한다	0.3	3.6	16.5	79.5
화를 내며 이용자에게 소리를 지른다	0.3	4.3	20.9	74.4
패널티(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0.8	5.0	29.9	64.3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주요 행위

-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 부위가 보이게 기저귀를 교체 한다.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 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 입힌다.
-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목욕, 기저귀 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 주요 행위

- 입소, 퇴소 시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 노인의 통장을 자녀가 관리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정적 거래가 있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방임 확대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주요 행위

-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킨다.
-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 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 입히기, 기저귀 교환, 손톱 깎기, 목욕 등)
-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다.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주요 행위

- 식사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을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주요 행위

-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길거리에 내다버린다.
- 소풍, 쇼핑 등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다.
-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는다.
- 노인을 타 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IV

## 노인학대 신고 및 행정처 분

1. 노인학대 신고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6개 직종)



**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노인 관련업무)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노인학대를 행한 경우	처벌
노인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2(벌칙))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성폭력 등 유기·방임·구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4호)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3)

## 학대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b>신체적학대</b>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b>성적학대</b>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b>방입학대</b>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입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b>경제적학대</b>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b>정서적학대</b>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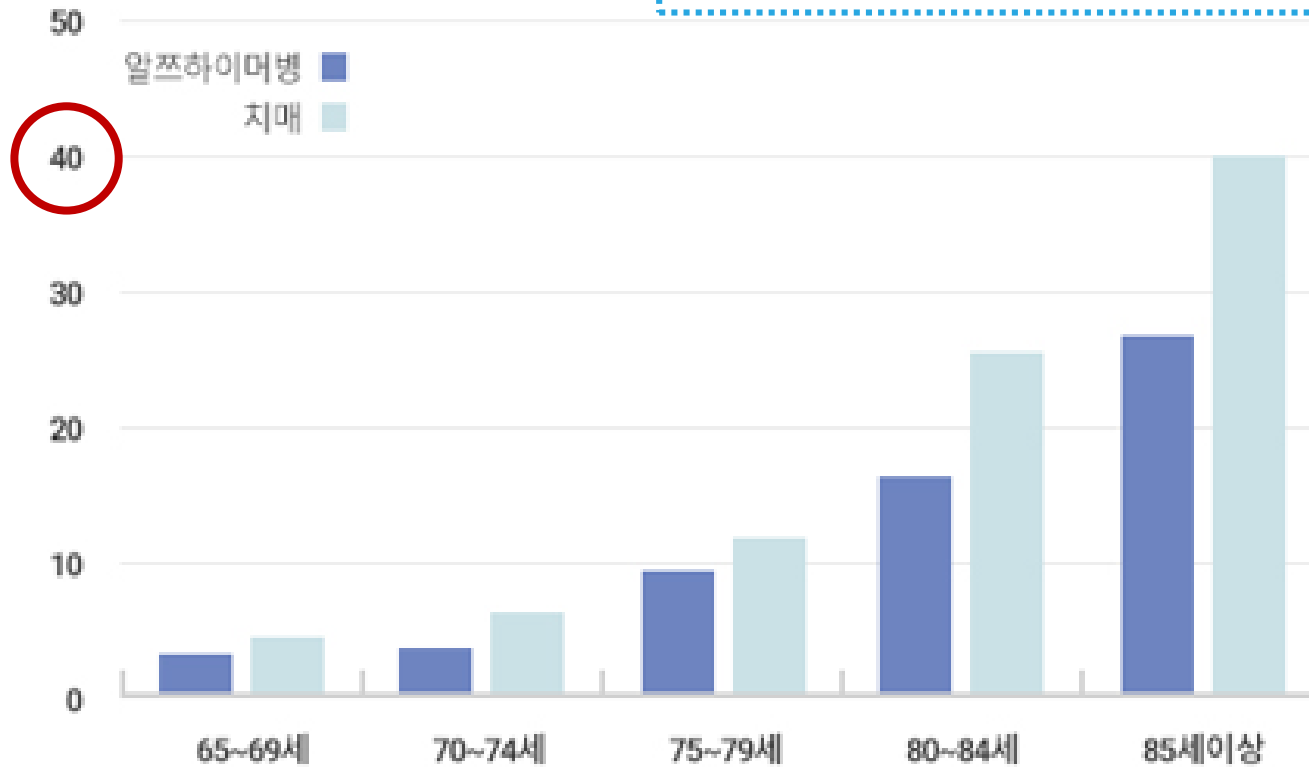
V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1. 노인인권 존엄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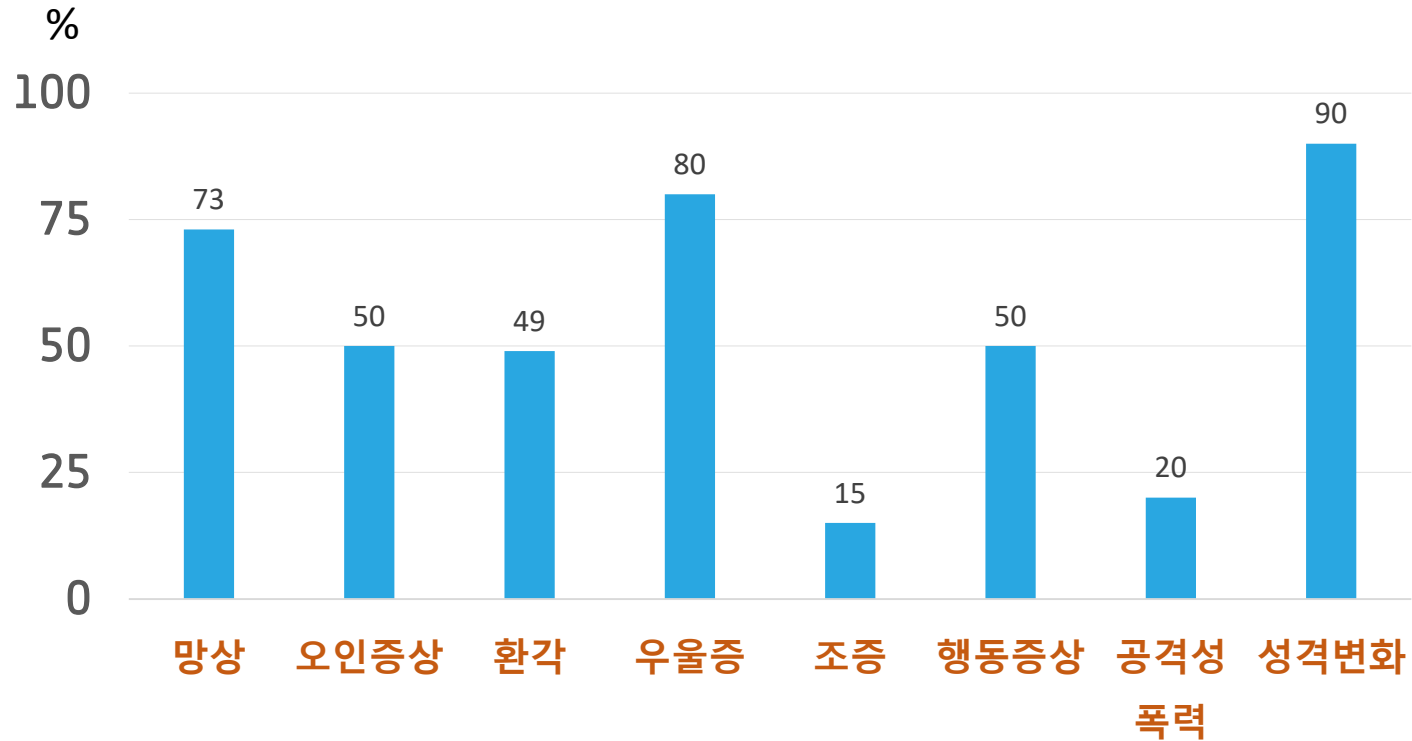
# 85세이상 치매진단 40%

누군가는 치매환자이며, 누군가는 치매가족이 된다.



출처 : 한국치매 학회

# 치매 이상 행동 및 심리증상



출처: 휴머니튜드 혁명\_대광의학 출판

# 노인인권 존엄케어

## 존엄케어란?

- 1 노인의 존엄을 이해하고 노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 권리 보호 및 보장 노력
- 2 노인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면 가능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상시켜 드리기 위한 케어

## 존엄케어의 중요 포인트

- 1 욕구: 의사소통, 식사, 배설, 청결유지, 침대에서 벗어나기, 옷 갈아입기, 수면, 이동 등
- 2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지켜드리는 것이 노인 존엄케어의 중요 포인트



# 존엄케어 4무 2탈

## 노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케어

- 기본적인 권리와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첫 걸음.
- 남아있는 잔존능력을 유지,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



실천  
방법

4무 : 냄새, 낙상, 욕창, 신체억제

2탈 : 기저귀, 침대(와상)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